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 12. 12(월)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122
제안일자	2022. 10. 27.
회부일자	2022. 11. 0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황명강 의원 외 18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이용허가 제외대상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있어 단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공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을 정비함 (안 제9조제2호, 안 제10조제2항)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의 제한 사항 신설(안 제11조2)
- 개방공간의 홍보물 부착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4조2)

####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2.11.01. ~ 11.07.(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99호)
- 의견제출 : 없음

#### 6. 검토의견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관리강화를 권고사항<sup>1)</sup>을 수용하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있어 단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공공시설의 이용허가 제외대상, 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이용제한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이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하고,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 허가와 취소, 이용 제한, 홍보물의 부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1) 3가지 항목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기한이 2020.3.31.이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경상북도는 감점 처리 됨

○ 안 제9조는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있어 개인과 단체가 경합할 경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

- 기존 조례 제9조제2호2)는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개인과 단체의 경합이 있을 경우 단체에게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sup>3)</sup>.
- 별도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직장·동호회 등의 단체에게 과도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시설의 독점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 시설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함에 있어 개인이나 단체에 상관없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부여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는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 제외대상을 규정함.

- 기존 조례 제10조4)는 정치·종교·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경우,

---

2) 제9조(우선이용)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 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3) 공공시설이용에 관하여 개인과 단체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국민권의 위원회가 개선할 것을 권고함

4) 제10조(이용허가 제외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시설 및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문화예술행사가 있더라도 이용을 허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이용을 통해 취하는 영리보다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큰 문화예술행사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공시설이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문화예술행사의 범위와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제2항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하여 추가적인 이용제한을 규정함.

- 기존 조례 제11조5)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제10조의 이용허가 제외대상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전에 고지한 기한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이용목적 허위기재, 이용료 미납부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5)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도지사는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신설되는 제11조제2항은 제1항의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제3항은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처분의 결과를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의2의 신설은 ▲전염병 환자, ▲만취자, ▲위험 및 방해물품 소지자, ▲그 밖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입장과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공시설의 이용 시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확산이 우려될 경우 전염병 환자에 대한 입장과 관람을 제한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만취자와 위험 및 방해물품 소지자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 확보 측면에서 입장과 관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있어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공공시설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제한에 대해 사전 알림과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사전에 이용제한에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의2의 신설은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자의 홍보물 부착하고자 할 때 지켜야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 기존 조례에는 홍보물 부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용자가 임의로 무분별하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어 이용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음.
- 따라서,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홍보물 유지 가능 기한, ▲체육시설 홍보물 부착 예외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홍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됨<sup>6)</sup>

##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2019.10.21.)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투명성 및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부합하고 타당성이 인정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시설에 특정 단체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련 규정 명시
    - 직장·동호인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차단
    - 단체와 일반 주민의 경기 연습은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 단체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의 설치 금지(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
  
  - 과도한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예 : 30일간)하고 위반행위를 공개